

| | |
|------|------------|
| 문서번호 | 건강관리과-9629 |
| 결재일자 | 2016.4.21.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 | | | | |
|-----|--------|--------|----------------|--|--|
| 주무관 | 모자보건담당 | 건강관리과장 | 보건소장 | | |
| 홍성미 | 이춘옥 | 이응철 | 04/21 代 정유섭 | | |
| 협 조 | | | | | |

2016년 제1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2016. 4.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16년 제1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 (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라 2016년 제1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I 개 요

- 일 시: 2016. 4. 14(목) 08:00~10:00
- 장 소: 성북구 보건소 8층 sb기획실
- 대 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위원 외 관련 담당자
- 회의진행: 개회, 위원위촉, 보건소장 인사말씀, 2015년 사업 결과보고, 2016년 사업 안내, 안건토의, 폐회
- 참석위원명단

| 구분 | 성명 | 경력 | 비고 |
|------|-----|-----------------|-----|
| 위원장 | 황원숙 | 성북구보건소장 | 당연직 |
| 부위원장 | 임인학 |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 위촉직 |
| 위원 | 김은영 |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 위촉직 |
| 위원 | 정재욱 |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이사 | 위촉직 |
| 위원 | 강종오 |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 위촉직 |
| 위원 | 고애경 |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 당연직 |
| 위원 | 곽정숙 | 교육청소년과 혁신교육협력팀장 | 당연직 |
| 간사 | 이응철 |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 과장 | 당연직 |

II

회의 결과

| 의제 | 회의결과 |
|---------------------------------------|---|
| 1. 의료지원협의체 부위원장 선출 | - 전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이신 윤여은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신규 성북구 치과의사회 회장인 임인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선출함. |
| 2. 2016년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치료 지원 단가 결정 | - 2015년 3차 회의를 통해 변경한 치료비 지원단가액을 변경 없이 2016년 확정 지원 단가로 결정함. * 결정 지원단가액 첨부 문서 확인 |
| 3.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확대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결정 | - 조례명을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의결함. - 저소득층 아동 지원 대상을 조례사항 변경을 통해 아동복지 시설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까지 포함하여 조례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함. |
| 4. 기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 - 조례에 포함되지 못하는 탈학생(비취학청소년)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조례 제4조 (지원대상) 관련 계획수립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III

후속조치사항

- 회의록 공개
- 협의 결과 사업 반영
- 참석 위촉 위원 수당지급

(회의 진행시간 2시간: 100,000원×4명 = 400,000원)

■ 회의 사진



■ 붙임 : 회의록 1 부 끝.

2016년 제1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록

I. 회의목적

- 지역치과의사회 및 민간단체 등의 협의체를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1) 2015년 사업 결과 보고

- 854명 아동에 대한 구강서비스 지원 및 195명 아동에 대한 치과치료 지원
- 지속적인 사업 수행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
 - 우식경험영구치지수 2014년 1.6p에서 2015년 1.38p로 낮아짐
 - 치과서비스 만족도 2014년 95.9%에서 2015년 96.5%로 높아짐.

(2) 2016년 사업 안내

-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수행 ,목표 680명
- 신규 사업으로 2016년에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추가 수행
 -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4학년 학생 2274명 대상

(3) 안건토의

① 의료지원 협의체 부위원장 선출

- 2014년부터 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윤여은 성북구 치과의사회 회장님의 사퇴로 인한 공석인 부위원장을 선출
 - 성북구 치과의사회 회장이신 임인한 신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
 - 참석위원 전체 동의로 임인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함.

② 2016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치과 치료 지원 단가 결정

- 2015년 제3차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2016년 개선 수가 결정
2016년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앞서 수가를 확정하여 지원하도록 함.
 - ▷ 사업 목적이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치과치료 참여 치과의원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 현 수가로 지원하는 것이 크게

- 불만은 없음으로 수가 추가 변동 없이 현 지원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참석위원 전체 동의로 결정 내역에 변동 없이 확정하여 지원하기로 함.

③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 조례명 개정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 변경

- 참석위원 전체 동의로 변경 결정.

- 저소득층 지원 대상 아동 확대에 대한 검토 의견

-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3호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 정의 내용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례에 의한 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대상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 있음.
- ▷ 현재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수행으로 아동들의 구강건강이 향상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아동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 ▷ 조례에 따른 사업 세부계획 수립시 현재 ‘아동복지시설아동’ 및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례 개정함에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으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조례” 제2조(정의) 3호 내용을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을 말한다.] 로 변경 동의.

④ 기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김은영 위원 :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수행함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인권위원회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견 제출
- ▷ 현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4학년 학생에 대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예산이 증가하거나 확대되어진다고 하면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우리구만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서울시에서 확정이 되어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탈 학교 아동 포함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임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이다보니 상징적인 의미로 포함되어지는 의의는 있으나 초등학교 아동이 홈스쿨링 할 정도라면 어느정도 가정형편이 되거나 부모의 신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됨. 중학교 까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있음.

▷ 저소득층 탈학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에는 4학년 학생이라고 지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고 포괄적으로 대상을 정해놓는 것은 서울시에서 4학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됨.

▷ 조례에는 대상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조례상 구청장이 사업추진계획수립시 세부범위나 지원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 탈 학교 학생 지원 범위 등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조례 변경 없이 학생에 포함되지 못하는 탈학생(비취학청소년)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III. 결론

- 신규 위촉위원인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임인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함.
- 치료비 지원단가액을 변경 없이 2016년 확정 지원 단가로 결정함.
- 조례명을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의결함.
- 저소득층 아동 지원 대상을 조례사항 변경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포함하여 조례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함.
- 조례에 포함되지 못하는 탈학생(비취학청소년) 중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IV. 향후계획

- 회의 결과 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
- 회의 결과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시 반영